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31 선고 2022가단934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전효철

변 론 종 결 2024. 3. 29.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2021. 2. 16.자 증여계약을 214,980,0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4,980,0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에 대한 아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B의 자녀로 B으로부터 아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B은 2018. 10. 10. 및 같은 해 12. 18.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D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2019. 2. 28.을 납부기한으로 160,225,510원, 2019. 4. 30.을 납부기한으로 159,619,500원, 2019. 4. 30. 납부기한으로 38,105,630원, 2019. 6. 30.을 납부기한으로 37,397,7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B은 2019. 6. 24.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E 토지를 매각하고, 2022. 6. 30.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2023. 1. 15. 납부기한으로 93,604,3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2023. 8. 1. 기준으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0,891,270원이다.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18. 10. 31.	2019. 2. 28.	160,222,510	228,717,160
	2018. 10. 31.	2019. 4. 30.	159,619,500	225,462,220
	2018. 12. 31.	2019. 4. 30.	38,105,630	53,824,080
	2018. 12. 31.	2019. 6. 30.	37,397,750	52,263,200
	2019. 6. 30.	2023. 1. 15.	93,604,312	100,624,610
합계			488,949,702	660,891,270

다. B 및 피고의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 설정

- 1) B은 2016. 1. 7.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토지(이하 '①토지'라 한다) 및 고양시 일산동구 G 토지(이하 '②토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429,000,000원, 채무자 A(피고임), 근저당권자 위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2) 한편 피고도 2016. 1. 7. 자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지상 건물(이하 '③건물'이라 한다)을 ①, ②토지와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429,000,000원, 채무자 A(피고임), 근저당권자 위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3) 위와 같이 피고 소유인 ③건물, B 소유인 ①, ②토지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는데, 피고는 자기의 재산을 자신의 채무에 관한 담보로, B은 피고의 채무에 관해 ①, ②토지를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라. B의 피고에 대한 ①, ②토지 증여 및 근저당권 설정 등

- 1) B은 2021. 2. 16. ①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후 2021. 6. 2. ①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I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I와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2) 한편 B은 2022. 3. 2. ②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2022. 3. 8.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은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1. 2.

16.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처분행위 및 사해의사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①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그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관련법리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한 ① 토지에 관하여 이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가 위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이전하여 회복해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B 소유의 ①, ②토지와 피고 소유의 ③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①토지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①토지의 가액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한정된다(B은 ①토지뿐만 아니라 ②토지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나, 원고는 ①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판단한다).

3)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축탁결과 및 갑 제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5. 4.경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인 ①토지의 가액은 418,858,000원,

②토지의 가액은 9,471,000원, ③건물의 가액은 293,000,000원으로 합계

721,329,000원(=418,858,000원 + 9,471,000원 + 293,000,00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잔액은 326,000,000원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잔액을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면, ①토지의
피담보채권액은 189,300,178원(=326,000,000원 x 418,858,000원/721,329,000원)이므로,
결국 ①토지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은 229,557,822원(=
418,858,000원 - 189,300,178원)이 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2023. 8. 1. 기준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660,891,27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책임재산의 가액인 229,557,822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14,980,008원의 한도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

5)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214,980,008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214,980,0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인섭

별지